#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장종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633 발의연월일: 2024. 12. 18.

발 의 자: 장종태·박용갑·김 윤

이수진 • 문진석 • 김기표

황정아 · 장철민 · 박정현

조승래 • 안태준 • 안규백

정동영 · 김남희 · 김선민

이원택 의원(16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올해 경로당 주5일 급식을 실시하면서 식사 제공 일수 증가에 따라 필요한 급식 지원인력 추가 투입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. 이외에도 정부는 지역사회 장애인·한부모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활동에도 노인일자리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임.

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일자리의 세부 사업내용이 달라 경로당 급식 지원인력 수급 부족이 예상되며, 그 외의 취약계층 지원 관련 일자리들도 인력 배치에 대한 전국적인 공통 기준이 없는 상황 임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

이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,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, 노인일자리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5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우선지정일자리의 선정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(이하 이 조에서 "우선지정일자리"라 한다)를 선정할 수 있다.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를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시・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노인공익활동사업에서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5조의2(우선지정일자리의 선 정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 자리(이하 이 조에서 "우선지 정일자리"라 한다)를 선정할 수 있다.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를 고시하여야 한다. ③ 시·도지사는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시 노인공익활동사 업에서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